

사하구 물품 관리 조중 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2. 제안설명의 요지(장일용 재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물품의 사용, 처분 등에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 개선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물품의 노후, 내구 연수의 경과 등으로 불용 처분을 할 경우,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하는 물품의 가격 기준을 조정함
 - 취득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한 불용 처분 시 타 시도에 소요조회를 하던 것을 2천만이상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타 시도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함
 - 취득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물품에 대하여 동일 시·도 내에 소요 조회를 하던 것을 폐지함
 - 불용품의 매각 가격 결정 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물품의 가격 기준을 취득가격 1천만원 이상의 물품에서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 조정함.

3. 관련법령

- 지방재정법 제10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 내지 제124조
-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개선지침(행정자치부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이번 개정 조례는 물품의 불용처분 결정 시 불용물품의 소요조회 기준과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물품의 가격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검토한 바

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의 불용 처분 시 현실과 맞지 아니한 일부 내용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개정 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5. 질의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효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